

고 시

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8-120호

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
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8조 규정에 의거 서초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8. 05. 17.

서 초 구 청 장
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서초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 - 가. 정비구역의 위치 :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33 외 7필지
 - 나. 정비구역의 면적 : 56,917.30㎡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- 가. 사업시행자의 성명 : 서초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(조합장 이보교)
 - 나. 사업시행자의 주소 :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암로 137, 2동 1층 (서초동, 신동아아파트)
4. 관리처분계획인가일 : 2018. 05. 15
5.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
 - 가.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
 - 1) 대지면적 : 45,532.48㎡
 - 2) 건축규모 : 지하3층/지상35층 아파트 14개동 1,340세대 및 부대·복리시설
 - 나.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

공급대상	주택 규모별 공급세대수(전용면적 기준)						
	계	59㎡	74㎡	84㎡	97㎡	114㎡	130㎡
계	1,340	489	143	529	79	67	33
토지등소유자	1,083	313	116	475	79	67	33
일반분양	236	166	22	48	-	-	-
보류시설	21	10	5	6	-	-	-
재건축소형(임대)	-	-	-	-	-	-	-

다.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 명세

1) 신설 : 도로 45.30㎡, 공원 1,689.27㎡, 녹지 9,129.80㎡

라. 기존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: 2019년 4월

※ 관계서류는 서초구청 주거개선과(☎ 2155-7349)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